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12. 12.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2월 5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12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2000. 12. 1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정 상 태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외한 다른 감면사항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 지방세법에 반영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과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감을 신설하며,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01년부터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상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함. (종전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2)

○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이 지방세법개정안 제270조제4항에 반영되어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는 삭제함. (종전 조례 제3조)

○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매매용중고자동차와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함. (종전 조례 제11조 및 제11조의2)

○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민주택 지원의 취지

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60제곱미터이하로 축소함. (안 제9조)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안 제10조)

○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민간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12조)

○ 전쟁기념사업회의 감면대상이 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18조)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위해 건축하였으나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현재 분양될 때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5년간만 감면하도록 규정함. (안 제20조)

○ 개정조례의 적용시한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사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개정안 준칙이 2000. 11. 23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한시적 조례인 동 조례중 2002. 12. 31일까지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외한 다른 감면규정은 적용시한이 2000.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류중인 지방세법개정(안) 및 동법시행령중개정령(안)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 제3조의2, 제11조, 제11조의2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자동차 및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의하면 2001. 1. 1일부터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과세가 폐지될 예정이고, 현행조례 제3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규정도 지방세법개정안 제270조제4항에 반영될 예정임으로 동조례안에서

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제3호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에서 60㎡이하로 종합토지세에 대한 임대주택 감면대상을 축소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 하였음.

○ 안 제16조 및 안 제21조의 내용은 현행조례상에는 없는 신설규정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서울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음.

○ 동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본칙을 제6장으로 구분하고 제1장 총칙에는 동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제3장에서는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제4장에는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제5장에서는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규정과 위 규정들을 보충하기 위한 보칙사항을 제6장에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2002. 12. 31까지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외한 다른 감면규정은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준칙안 내용 중 필요한 사항만 개정하려는 동개정조례안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12.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외한 다른 감면사항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 지방세법에 반영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과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감을 신설하며,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2001년부터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상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함(종전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2).

나.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이 지방세법개정안 제270조제4항에 반영되어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는 삭제함(종전 조례 제3조).

다.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매매용중고자동차와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함(종전 조례 제11조 및 제11조의2).

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민주택 지원의 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60제곱미터이하로 축소함(안 제9조).

- 마.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0조).
- 바.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민간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2조).
- 사. 전쟁기념사업회의 감면대상이 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
- 아.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위해 건축하였으나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현재 분양될 때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5년간만 감면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 자. 개정조례의 적용시한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사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개정근거

- 가. 지방세법(2000.2.3 법률제6260호) 제7조 내지 제9조
- 나. 도시계획법(2000. 1.28 법률제6243호) 제3조, 제24조, 제26조
-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0.1.28법률제6241제3호) 제3조
-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1999.12.31 법률제6073호) 제17조
- 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2000.1.21 법률제6195호) 제18조의4

4. 조례(안) : 별 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합 의 :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음.
- 나. 입법예고 : 정기의회외의 일정을 감안하면 시한이 촉박하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생략
-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0.12.4)
- 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의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의하여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서울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3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24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년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 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보 칙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5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별지서식)

| | | | | |
|---|-------------------|--------------------|---------|---------|
|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7일 |
| 성 명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 | |
| 주 소 | | | | |
| 감면내용 | 세 목 | 연도/기분 | 당 초 세 액 | 감 면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사유 |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 제 조 | | | |
|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 | 인(서명) | |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 | 수수료 |
| | | | | 없 음 |